

설계자	심사자	사무관	과 장	설계년월일	2022. . .
				심사년월일	2022. . .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설계서

금 사천삼백만원정 (₩43,000,000)

국 토 교 통 부
철 도 건 설 과

1. 설계설명서

1. 과업명 :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의거 재해 영향성을 검토하고 재해 위험(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0일)

4. 과업의 주요내용

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절차 등)의 규정 및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호, 2021.1.12.)에 의한 재해영향성 검토

- 기초현황 조사
- 재해영향성 검토 대상지역 설정
- 재해영향성 예측 및 입지 적정성 검토
- 재해영향 저감대책 및 저감방안 제안 등

나. 기타 우리부가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5.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1) 직접영향권 : 해당 철도노선이 경유하는 해당 지자체
- (2) 간접영향권 : 한반도 전체 및 노선과 직접 연계되는 지역

나. 시간적 범위 : 연구 기준년도를 2022년도로 하고 최근 10개년 간 발생한 재해현황을 조사 및 분석한다.

6. 설계변경 조건

가. 조사구간의 시·종점의 위치 및 연장변경이 있을 경우

나. 평가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 가능

다.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라.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 연장 가능

-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 2)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3)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처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II. 과업지시서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호, 2021.1.12.)'과 관련 상위계획, 국토종합건설계획, 도시계획, 행정계획, 기타 법령에 따른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심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해야 하며, 다음의 순서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1)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의 통계자료
- 2) 서울시 및 경기도 통계자료
- 3)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 4) 현지 조사결과

다. 용역 수행자는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에 필요한 재해영향 검토,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획, 설계 및 평가 내용의 상호보안 및 Feed-Back을 통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 수행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우리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사.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결과에 대하여 용역 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우리부의 재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용역 수행자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2. 세부사항

가. 평가 대상지역의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를 시행하고 개발에 따른 영향권을 검토하여 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한다.

나. 유역 및 재해현황 조사

- 1) 유역의 기하학적 특성과 평면적·입체적 특성으로 조사하고, 하천현황을 조사한다.
- 2) 기상에 따른 강수량 자료와 수위관측과 관련된 수문을 조사한다.
- 3) 지형형상을 포함하여 표고 및 경사 분석을 실시하고, 지층·지표지질을 조사·분석한다.
- 4)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과 자연재해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재해현황을 조사·분석한다.
- 5) 방재시설 현황 및 방재관련 계획, 현지주민 탐문 및 현지조사에 의해 시행한다.

다.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 1) 홍수유출, 토사유출, 사면안정에 대한 분석기법을 도입하여 해석을 위한 지표를 설정한다.
- 2) 유역변경에 따른 영향예측 및 분석을 시행한다.

라. 예상재해 저감대책

- 1)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을 계획 전·후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 2) 사업에 따른 사업시행 전 사전조치 등을 포함한 개발 중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개발 후의 홍수 및 토사유출 저감대책, 사면안정대책 등을 수립한다.
- 3) 수립된 저감대책에 대한 저감효과를 분석한다.

마. 유지관리계획 : 사업에 따른 사업시행 중 유지관리계획과 개발 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바. 종합평가 및 결론 : 재해영향을 제거할 수 있는 최적 안을 제시하고, 이의 이행계획을 수립한다.

3. 안전 및 보안

가. 안전

- (1) 수급자는 조사 인원 및 장비의 운용에 있어 적절한 관리와 통제로 안전 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특히 역구내, 열차운행선로 또는 도로상의 현장작업은 감시원을 배치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2) 책임기술자는 일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보안

- (1) 과업수행자의 대표자는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과업착수와 동시에 준수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해서는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책임 하에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착수계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과업 참여인원은 최소화 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 (3) 과업수행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보안 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해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 (4)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을”의 과업감독관은 과업종사에 계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월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 (5)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 등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6)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으며, 납품물량 외 추가 발행을 금지한다. 또한 불량 및 파지 등의 소각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7)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함
- (8)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고 원지·폐지 등을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함

- (9) 성과품 외 과업을 수행하면서 작성한 자료는 필요한 부수만큼 발행하며, 필요가 없어진 자료에 대해서는 회수 후 파기대책에 따라 파기한다.
- (10) 비밀·대외비 등 주요사업의 경우 업무일지 등을 작성 할 수 있다.
- (11)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 (12) 과업종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서약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 (13) 과업수행 중 발생한 자료 등의 폐기물은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하에 완전 소각하여야 한다.
- (14)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15) 기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부실업자 등에 대한 제재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및 부실벌점이 부과된다.

- (1) 고의 또는 사전조사 소홀로 기본계획을 불합리하게 수립되게 함으로써 설계부실을 유발한 경우
- (2) 본 용역결과로 기본계획 또는 설계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 규모보다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어 국가예산을 낭비하게 된 경우 등

5. 기타사항

- 가. 관련기관과는 재해영향 조사시부터 수시로 사전협의하여 재해영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나. 감독자는 추가 과업내용을 통보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본 과업 시행중에 예기치 못한 사고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알려야 한다.
- 다. 본 과업 지시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과업수행으로 야기되는 제반사항, 문구의 해석 및 관계규정의 적용 등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만일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이나 예규 등에 따른다.
- 라. 수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예정공정표에 따라 책임기술자의 명의로 착수 후 매달마다 진도보고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에는 우리부에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 마. 본 과업이 종료된 후라도 협의의 불충분, 현지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설계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급자 부담으로 소정 기일내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바. 수급자는 본 과업수행에 있어 합리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모든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사. 관련 법령에 따라 본 용역 완료 후 즉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관련된 서류를 준비 작성하여야 한다.

7.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과업수행계획서는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최종보고서는 과업완료 30일 이전에 최종보고서(안)을 작성하여 우리부의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3. 보고서 및 성과품
 - 가. 재해영향성 검토서 : 20부
 - 나. 성과물수록 CD 및 USB : 각 5SET

III. 예정공정표

구분	표 준 공 정						비 고
	60	120	180	240	300	360	
- 기초현황조사 및 재해영향성 검토 대상지역 설정							
- 재해영향성 예측							
-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 협의기관 협의							
- 최종 보고서 작성 및 제출							